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45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 박홍근 • 민병덕 • 이수진

김문수 · 박상혁 · 임광현

진성준 • 이용우 • 한민수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 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국가 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 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또는 제3국(이하 "남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남한"을 "남한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1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			
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	"북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		
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선 이남지역 또는 제3국(이하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u> "남한등"이라 한다)</u>		
이내의 친척 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			
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u>남</u>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u>남</u>		
<u>한</u> 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	<u>한등</u>		
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			
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